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11. 6. 24, 개정 2013. 3. 08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개정 2019. 3. 25.
개정 2020. 10.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 계획
2. 제5조제2항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0.)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학생부처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인재개발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및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 중 학생과 외부인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03. 08, 2018. 3. 30., 2019. 3. 20., 2019. 3. 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5조 제2항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2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대학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18.9.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2011. 0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양기초교육원장”을 “교양융합대학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생략>

부칙<제914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본문 중 “인력개발원장”을“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0. 10.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